

#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I 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2938호
2. 발의자 : 정준호 의원
3. 발의일자 : 2025년 8월 11일
4. 회부일자 : 2025년 8월 14일

### II . 제안이유

○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기관의 장이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·학생의 학부모,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피해자가 지급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안전사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.

### III . 주요내용

1.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12조의2)

#### **IV. 참고사항**

- 1. 관계법령 :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**
- 2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**
- 3. 입법예고 : 2025. 8. 20 . ~ 8. 24. (의견 : 없음)**

## 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박광선)

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11일 정준호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938호로 발의되어 2025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교육기관의 장이 학교안전공제사업에 대해 피공제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, 피해자를 적기에 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의되었습니다.

### 2. 주요 검토의견

- 안 제12조2는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교육기관의 장이 학생 및 보호자 등에게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종전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(이하 「학교안전법」)은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규정<sup>1)</sup>되어 있었으나, 피공제자가 청구 절차 및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적기에 적절한

1) 제41조(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) ①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.

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 
제3조(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)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.  
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공제급여청구서에는 청구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(법 제3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간병료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에 대한 공제급여청구서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입원확인서 등 의무기록과 간병 필요 여부 등에 관하여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이 발급한 소견서로 한다)를 첨부해야 한다.  
③공제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 
④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그 사실을 공제가입자와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.

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.

- 이에 국회는 지난 2025년 1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가입자는 피공제자에게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해 안내하도록 「학교안전법」을 개정(2025.7.22. 시행)하였고<sup>2)</sup>, 같은 법 시행령에 안내 방법 및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<sup>3)</sup>되었습니다.

#### [그림-1] 학교안전공제 공제급여 청구절차<sup>4)</sup>



-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재규정하여 학교장이 피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공제사업 내용을 직접 안내하도록 하는 것으로, 주민 이해도 제고라는 측면에서 적기에 피해를 구제하고 공제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고 판단됩니다.

2) 제41조의2(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) ①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피공제자에게 제41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, 피공제자가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등에게도 그 사업을 안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안내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3) 제20조의3(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방법 및 내용)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안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안내 방법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

가. 서면 교부  
나. 우편 또는 전자우편  
다. 전화 또는 팩스  
라.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

2. 안내 내용: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학교안전공제 사업

가. 공제급여의 청구 방법  
나. 공제급여의 처리 절차  
다. 공제급여의 지급 방법  
라. 그 밖에 학교안전공제 사업과 관련한 중요 사항

4) '시의원 요구자료 제출(1720번)' (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예방사업부-3668, 2025.8.19.)

- 다만, 안 제1항의 「법」 및 제2항의 「법 시행령」은 지침하는 법령이 모호하므로, 의미 전달의 명확성을 위하여 각각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및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으로 풀어서 기재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  -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 역시 「법 시행령」으로 표기된 부분을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으로 수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10439, 2025. 8. 20.).<sup>5)</sup>
-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의안심사지원팀장	정진국(2180-8263)	입법조사관	박소현(2180-8265)
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

5)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(행정관리담당관-10439, 2025. 8. 20.)